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공 직 자 등 의 병 역 사 항 신 고 및
공 개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852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의 신고·확인 대상에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거나 마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정신지체” 등 용어를 정비하려고 함.

3. 주요내용

가. 병역사항 변동의 신고·확인 대상에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거나 마친 사항을 추가(안 제9조)

- 1)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852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2) 현역, 보충역 등의 복무를 시작하거나 마친 사항 등 신고·확인 대상에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시작하거나 마친 사항을 추가함.

3) 신고의무자가 신고하고 병무청장이 분기별로 확인할 병역사항 변동사항에 대체복무요원이 복무를 시작하거나 마친 사항을 추가하게 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행정의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차별적인 용어 정비 등(별표)

“정신지체”와 같이 차별적인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형태장애”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행태장애”로 수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의견조회(2020. 8. 19. ~ 8. 31.)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8. 19. ~ 9. 28.)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별표 제1호 정신건강의학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기질성 정신장애 ○물질관련 장애 ○정신분열병·정신분열양 장애·분열정동형(조현정동형) 장애 또는 망상장애 ○그 밖의 정신병적 장애 ○1형 또는 2형 양극성장애(조울증) ○주요 우울장애 ○그 밖의 기분장애 ○신경증적 장애 ○생리적 장애 또는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형태증후군 ○인격장애 또는 행태장애 ○경계선지능 또는 정신장애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제출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병역 변동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병역사항을 말한다.	제9조(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제출 등) ①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 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u>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u> 의 복무를 시작하거나 마친 경우	4. ----- ----- ----- ----- <u>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u> ----- -----
5. ~ 9. (생략)	5. ~ 9.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인력정책과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2) 748 - 5137~9 (042) 481 - 2641